한국투자글로벌지수&테마로테이션증권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11월 20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투자설명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년 6월 19일

3. 정정사항

- 해외투자대상자산 삭제
- 매입 및 환매 기준시점 변경
- 매입 기준가격 적용일 변경
- 환매 기준가격 적용일 및 환매대금 지급일 변경

항 목	정정요구·명령관련 여부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아니오	해외투자대상자산 삭제	10.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편입하는 경우 해당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위험이 이 집합투자기구에 전이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므로,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서 발생한 위험이 이 투자신탁에 전이될 위험이 높습니다.	10.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편입하는 경우 해당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위험이 이 집합투자기구에 전이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국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므로,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서 발생한 위험이 이 투자신탁에 전이될 위험이 높습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아니오	해외투자대상자산 삭제	11. 집합투자기구의 특성을 감안하여 유동성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경우 유동성 위험과 연관된 집합투자기구의 특성 및	11. 집합투자기구의 특성을 감안하여 유동성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경우 유동성 위험과 연관된 집합투자기구의 특성 및

			그로 인해 유동성이 부족하여 환매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집합투자기구(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 자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재간접형 투자신탁으로 시장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에 따라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 위험이 확대될 경우 환매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유동성이 부족하여 환매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국내 집합투자기구(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 자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재간접형 투자신탁으로 시장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에 따라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 위험이 확대될 경우 환매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2부.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아니오	해외투자대상자산 삭제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투자 필요성 및 선정기준 - 이 투자신탁은 미래 신성장 동력과 연관된다고 판단되는 관련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국내·외 상장 ETF 또는 공모펀드 등 투자대상 하위집합투자기구(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합니다. 다양한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분산투자는 신성장 동력 테마 관련 수익을 추구함과 동시에 변동	이 투자신탁은 국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투자 필요성 및 선정기준 - 이 투자신탁은 미래 신성장 동력과 연관된다고 판단되는 관련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국내 상장 ETF 또는 공모펀드 등 투자대상 하위집합투자기구(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합니다. 다양한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분산투자는 신성장 동력 테마 관련 수익을 추구함과 동시에 변동

			성을 낮추어 안정적인 투자수익을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이하 생략)	성을 낮추어 안정적인 투자수익을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이하 현행과 같음)
제2부. 8. 가. 투자대상	아니오	해외투자대상자산 삭제	※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재간접투자신탁입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종류와 특성(주된 투자대상자산, 펀드 종류, 펀드 규모, 운용회사 등) 및 편입비중 한도 등에 관한 사항은 “제2부.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투자신탁은 국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재간접투자신탁입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종류와 특성(주된 투자대상자산, 펀드 종류, 펀드 규모, 운용회사 등) 및 편입비중 한도 등에 관한 사항은 “제2부.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부. 8. 가. 투자대상	아니오	해외투자대상자산 삭제	[집합투자증권] 법 제9조 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발행된 것을 포함한다) [주식] 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 제15항 제3호의	[집합투자증권] 법 제9조 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주식] 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 제15항 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한다)_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채권]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_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한다) [채권]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어음]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2(-)이상이어야 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이하 생략)	[어음]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2(-)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현행과 같음)
제2부. 8. 가. 투자대상	아니오	해외투자대상자산 삭제	[장내파생상품] 주식·채권·통화 관련 주식·채권·통화나 주식·채권·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 [장외파생상품] 주식·채권·통화 관련 주식·채권·통화나 주식·채권·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	[장내파생상품] 주식·채권 관련 주식·채권이나 주식·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 [장외파생상품] 주식·채권 관련 주식·채권이나 주식·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
제2부. 8. 가. 투자대상	아니오	해외투자대상자산 삭제	-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	-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

			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 3. (생략)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삭제>
제2부. 8. 다. 편입한 집합투자증권에 관한 사항	아니오	해외투자대상자산 삭제	-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므로,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서 발생한 위험이 이 투자신탁에 전이될 위험이 높습니다. (이하 생략)	- 이 투자신탁은 국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므로,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서 발생한 위험이 이 투자신탁에 전이될 위험이 높습니다. (이하 현행과 같음)
제2부. 9.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아니오	해외투자대상자산 삭제	- 이 투자신탁은 주로 신성장 동력 테마 관련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ETF, 펀드)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1) 주요 투자전략 - 주로 신성장 동력 테마 관련 국내·외 ETF, 국내·외 주식 및 IPO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분산투자 (이하 생략)	- 이 투자신탁은 주로 신성장 동력 테마 관련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ETF, 펀드)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1) 주요 투자전략 - 주로 신성장 동력 테마 관련 국내 ETF, 국내 주식 및 IPO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분산투자 (이하 현행과 같음)
제2부. 9. 가. (4) 환위험 관리전략	아니오	해외투자대상자산 삭제	■ 참조지수 지정 사유 ㅇ 이 투자신탁은 주로 국내·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에	■ 참조지수 지정 사유 ㅇ 이 투자신탁은 주로 국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에 분

			분산투자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투자전략상 글로벌 신성장 동력 관련 국내·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등에 주로 투자하나, 대표성을 지니는 글로벌 지수가 없어 선진국 및 신흥국의 성장주에 투자하는 지수를 참조지수로 선택하였습니다. 다만, 상기 참조지수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거나 투자할 예정인 국가 및 자산 비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이 투자신탁 성과와 괴리가 발생 할 수는 있습니다.	산투자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투자전략상 글로벌 신성장 동력 관련 국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등에 주로 투자하나, 대표성을 지니는 글로벌 지수가 없어 선진국 및 신흥국의 성장주에 투자하는 지수를 참조지수로 선택하였습니다. 다만, 상기 참조지수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거나 투자할 예정인 국가 및 자산 비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이 투자신탁 성과와 괴리가 발생 할 수는 있습니다.
제2부. 10. 가. 일반위험	아니오	해외투자대상자산 삭제	[국내·외 집합투자증권 가격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ETF 등)에 투자신탁재산을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피 투자한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자산 가격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내 집합투자증권 가격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국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ETF 등)에 투자신탁재산을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피 투자한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자산 가격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2부. 10. 가. 일반위험	아니오	해외투자대상자산 삭제	[시장거래에 따른 순자산가치와의 괴리위험]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상장지수투자신탁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신탁의 순자산가치	[시장거래에 따른 순자산가치와의 괴리위험] 이 투자신탁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상장지수투자신탁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신탁의 순자산가치인

			인 기준가격과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 및 시장수급의 변화로 인해 형성되는 시장거래가격이 서로 다르게 형성될 수 있으며, 또한 그로 인해 시장가격의 변동성이 증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기준가격과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 및 시장수급의 변화로 인해 형성되는 시장거래가격이 서로 다르게 형성될 수 있으며, 또한 그로 인해 시장가격의 변동성이 증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제2부. 10. 가. 일반위험	아니오	해외투자대상자산 삭제	[주식가격 하락위험] 이 투자신탁은 한국거래소 및 외국거래소에 상장된 국내주식 및 외국주식에 주로 투자하므로 국내주권 및 외국주권의 가격하락 위험에 노출됩니다. 즉, 주식 가격은 투자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하게 하락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식가격 하락위험] 이 투자신탁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국내주식에 투자할 수 있으므로 국내주권의 가격하락 위험에 노출됩니다. 즉, 주식 가격은 투자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하게 하락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2부. 10. 가. 일반위험	아니오	해외투자대상자산 삭제	[환율변동 위험] 이 투자신탁은 환율변동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환헤지전략을 실행하지 아니할 계획입니다. 원화로 투자금을 납입시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투자함으로써 외국통화의 가치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위험에 노출됩니다. 따라서, 해당 통화가 원화 대비 가치가 하락할 경	[환율변동 위험] 이 투자신탁은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직접 투자하지 아니하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국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ETF 등)이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투자하고 환헤지 거래를 실행하지 아니하는 경우(환노출형 ETF 등)에는 해당 피투자 집합투자기구를 통해 외국통화의 가치

			우 투자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위험에 노출됩니다. 즉, 이 투자신탁은 원화(KRW)와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구성종목 통화(USD, EUR, JPY, INR 등)의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자산의 가치가 변하는 위험을 지게 됩니다. 이는 해당 외화투자자산의 가치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원화와 투자대상국 통화간의 상대적 가치 변화로 인해 투자시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원화의 가치가 투자대상국 통화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높아지면, 외화자산인 투자자산의 가치는 원화가치로 환산했을 때 낮아집니다. 이로 인하여 해당 통화가 원화대비 가치가 하락할 경우 투자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투자 집합투자기구가 환헤지를 실행하는 경우(환헤지형 ETF 등)에도 해당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환헤지 비용 발생 및 실제 헤지비율과 목표 헤지비율의 차이 등으로 인한 손실이 이 투

				자신탁에 전이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피투자 집합투자기구를 통한 환율변동위험에 대하여 별도의 환헤지 거래를 실행하지 아니할 계획입니다.
제2부. 10. 가. 일반위험	아니오	해외투자대상자산 삭제	[시장위험] 이 투자신탁은 주로 국내·외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등에 투자함으로써 국내·외 금융시장의 주가, 이자율 및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정치·경제상황, 외국정부의 조치 및 세제의 변경 등도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장위험] 이 투자신탁은 주로 국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및 국내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며, 피투자 집합투자기구는 해외 주식 등에 투자하므로 국내·외 금융시장의 주가, 이자율 및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정치·경제상황, 정부의 조치 및 세제의 변경 등도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2부. 10. 가. 일반위험	아니오	해외투자대상자산 삭제	[신용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국내·외 집합투자증권, 채권 및 장외파생삼품 거래 등에 있어서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에 따라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 하락, 채무불이행, 부도발생 등에 따른 환매연기로 인한 기	[신용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국내 집합투자증권, 채권 및 장외파생상품 거래 등에 있어서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에 따라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 하락, 채무불이행, 부도발생 등에 따른 환매연기로 인한 기회비용

			회비용 발생과 함께 투자원금액 손실, 거래상대방이 거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데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생과 함께 투자원금액 손실, 거래상대방이 거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데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2부. 10. 나. 특수위험	아니오	해외투자대상자산 삭제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설립지 국가 위험] 이 투자신탁의 일부 피투자 집합투자기구는 해외에 설립되어있으며, 외국 감독기관의 규제를 받습니다. 투자자들은 해당국 감독기관에서 제공하는 모든 규제 보호장치들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삭제>
제2부. 10. 나. 특수위험	아니오	해외투자대상자산 삭제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 관련 위험] 이 투자신탁의 일부 피투자 집합투자기구는 외국 집합투자업자의 경영 및 재무상태, 운용전문인력의 교체, 내부정책에 따른 정보의 비접근성 등으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 투자신탁은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투자관련 의사결정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외국 집합투자업자의 결정으로 인하여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 손실이 발생하거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및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 관련 위험] 이 투자신탁의 일부 피투자 집합투자기구는 타 집합투자업자의 경영 및 재무상태, 운용전문인력의 교체, 내부정책에 따른 정보의 비접근성 등으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 투자신탁은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투자관련 의사결정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타 집합투자업자의 결정으로 인하여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 손실이 발생하거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및 청산이

			청산이 결정될 경우 투자자산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결정될 경우 투자자산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제2부. 10. 나. 특수위험	아니오	해외투자대상자산 삭제	[환금성 제약위험]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상장지수투자신탁에 투자함으로써 해당 상장지수투자신탁이 상장된 이후 유동성공급자가 시장거래 조성을 위한 노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나 호가 공백이나, 거래부진 등의 사유에 따른 실시간 매매의 제약 등으로 환금성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금성 제약위험] 이 투자신탁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상장지수투자신탁에 투자함으로써 해당 상장지수투자신탁이 상장된 이후 유동성공급자가 시장거래 조성을 위한 노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나 호가 공백이나, 거래부진 등의 사유에 따른 실시간 매매의 제약 등으로 환금성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2부. 10. 나. 특수위험	아니오	해외투자대상자산 삭제	[상장폐지 위험]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상장지수투자신탁에 투자함으로써 법령 등에서 정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상장지수투자신탁의 상장을 폐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투자신탁은 해지되고 잔여자산을 분배할 것이나, 잔여자산 분배 시까지의 기간 동안 유가증권시장 등을 통한 수익증권의 현금화가 지연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상장폐지 위험] 이 투자신탁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상장지수투자신탁에 투자함으로써 법령 등에서 정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상장지수투자신탁의 상장을 폐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투자신탁은 해지되고 잔여자산을 분배할 것이나, 잔여자산 분배 시까지의 기간 동안 유가증권시장 등을 통한 수익증권의 현금화가 지연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제2부. 10. 나. 특수위험	아니오	해외투자대상자산 삭제	[글로벌투자 위험] 이 투자신탁은 여러 국가에서 발행되거나 상	[글로벌투자 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국내 집합투자기구

			장되는 주식 및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이 더 많이 노출이 되어있고, 외국인 투자한도, 넓은 매매호가 차이, 거래량 부족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대상국가의 다양한 기준과 규제(회계, 감사 및 재무 보고 기준, 청산 결제 절차, 배당에 관한 세금 등)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의 변화 등 정책적 변화 및 사회 전반적인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 위험이 있습니다.	의 집합투자증권(ETF 등)은 여러 국가에서 발행되거나 상장되는 증권에 투자하므로, 이 투자신탁은 피투자 집합투자기구를 통해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고, 외국인 투자한도, 넓은 매매호가 차이, 거래량 부족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대상국가의 다양한 기준과 규제(회계, 감사 및 재무 보고 기준, 청산 결제 절차, 배당에 관한 세금 등)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의 변화 등 정책적 변화 및 사회 전반적인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 위험이 있습니다.
제2부. 10. 나. 특수위험	아니오	해외투자대상자산 삭제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위험] 이 투자신탁은 해외 유가증권 및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므로 특정 외국 세법에 의한 배당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는 해외 유가증권에 투자하므로 특정 외국

			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특정 외국의 세법 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후배당소득, 세후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특정 외국의 세법 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세후배당소득, 세후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하여 이 투자신탁의 수익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제2부. 10. 나. 특수위험	아니오	해외투자대상자산 삭제	[자금송환 위험] 이 투자신탁은 해외에 투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국가로부터 이 투자신탁의 배당소득 및 매매차익의 본국송환 행위 또는 증권의 매매절차와 관련한 행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 국가로부터의 투자제한의 적용 또는 자금의 송환에 대한 정부의 승인이 지연되거나 거절당함으로써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금송환 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는 해외에 투자하며, 이 경우 해당 국가로부터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배당소득 및 매매차익의 본국송환 행위 또는 증권의 매매절차와 관련한 행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투자 집합투자기구가 투자대상 국가로부터의 투자제한의 적용 또는 자금의 송환에 대한 정부의 승인이 지연되거나 거절당하는 경우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환매 및 가격에 불리한 영향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이 투자신탁도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2부. 10. 다. 기타 투자위험	아니오	해외투자대상자산 삭제	[오퍼레이션 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해외투자의 경우 국내투자와 달리 시차에 의한 시장 폐장 및	[오퍼레이션 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가 해외에 투자하는 경우 국내투자와 달리

			개장시기의 차이로 인해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에 있어 시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운용과정에서 운영위험이 국내투자 보다 더 높습니다.	시차에 의한 시장 폐장 및 개장시기의 차이로 인해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평가에 시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평가 시차가 이 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 평가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운용과정에서 운영위험이 국내 투자보다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제2부. 10.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아니오	해외투자대상자산 삭제	-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의 투자를 통해 자본이득을 추구합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환율변동위험에도 일부 노출되므로 6개의 투자위험등급 중 위험도가 높은 2등급으로 분류됩니다. - 이 투자신탁은 전세계 경제여건 변화와 외국 주식의 가격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이해하고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과 관련된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로서 환율변동에 따른 투자위험을 이해하고, 투자원본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잘 아는 장기투자자에게 적합합니	- 이 투자신탁은 국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의 투자를 통해 자본이득을 추구합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환율변동위험에도 일부 노출되므로 6개의 투자위험등급 중 위험도가 높은 2등급으로 분류됩니다. - 이 투자신탁은 전세계 경제여건 변화와 피투자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외국 주식의 가격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이해하고, 피투자 집합투자기구를 통해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간접적으로 노출되는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로서 환율변동에 따른 투자위험을 이해하고, 투자

			다.	원본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잘 아는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제2부. 11. 가.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아니오	매입 및 환매 기준시점 변경 매입 기준가격 적용일 변경	1) 17시[오후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3영업일(D+2)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2) 17시[오후5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4영업일(D+3)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1) 15시 30분[오후3시 30분]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2영업일(D+1)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2) 15시 30분[오후3시 30분]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3영업일(D+2)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제2부. 11. 나.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아니오	매입 및 환매 기준시점 변경 환매 기준가격 적용일 및 환매대금 지급일 변경	1) 17시[오후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3영업일(D+2)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4영업일(D+3)에 환매금액 지급 2) 17시[오후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4영업일(D+3)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5영업일(D+4)에 환매금액 지급	1) 15시30분[오후3시 30분]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2영업일(D+1)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4영업일(D+3)에 환매금액 지급 2) 15시30분[오후3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3영업일(D+2)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4영업일(D+3)에 환매금액 지급
제2부. 11. 나.	아니오	매입 및 환매 기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5)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준시점 변경 환매 기준가격 적용일 및 환매대금 지급일 변경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8영업일 전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한 경우 9영업일 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 (생략)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2영업일 전일(15시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한 경우 2영업일 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현행과 같음)
제2부. 11. 나. 환매 ※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아니오	매입 및 환매 기준시점 변경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는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당일 17시[오후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는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당일 15시30분[오후3시30분]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제4부.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아니오	해외투자대상자산 삭제	※ 해외보관대리인 -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와 협의하여 해외보관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해외보관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1. 신탁계약서 제15조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 중 해외에 예탁한	<삭제>

			자산의 안전한 보관 및 관리업무 2. 신탁계약서 제15조의 투자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추심 업무 3. 위의 업무와 관련된다고 신탁업자가 판단하는 업무	